

인천지방법원 2021. 11. 3 선고 2020나668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8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9가단21725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7. 1. 3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

가.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- 1) 원고는 2019. 3. 22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제1심법원은 2019. 4. 4. 피고의 주소지인 “인천 서구 G, F동 H호”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, 우편집배원은 2019. 4. 5. 피고의 동거인인 피고의 자녀 N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을 교부하였다.
- 2) 제1심법원은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9. 5. 17. 판결선고기일통지서(무변론)를 위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의 자녀 N이 2019. 5. 21. 위 통지서를 교부받았다.
- 3)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2019. 6. 12. 피고에게 이를 발송하였는데, 2019. 6. 17.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.
- 4) 이에 제1심법원은 2019. 6. 24.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, 2019. 7. 8. 판결선고기일통지서(무변론)를 각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,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9. 7. 18.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.
- 5) 제1심법원은 2019. 7. 22. 및 2019. 7. 31.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9. 8. 14.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제1심판결 정본이 2019. 9. 3.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.
- 6)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20. 7. 10.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항소는 제1심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,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

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비로소 가능하다(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). 여기에서 말하는 ‘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’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, 소장 부분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). 또한 추완항소에 있어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 추완 사유는 항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 참조).

다.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 N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,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,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양민호, 판사 김범진, 판사 김 현

